



자활 촉진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한국에너지재단(이하 “양 기관”)은 각 기관의 공동 목적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상호 협력하여 취약계층(수급자 및 차상위자)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(이하 “사업”)을 위해 지원 대상 가구 발굴, 우선 지원 등에 있다.

제2조(운영원칙)

-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

- ①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, 통합 사례관리 가구 등 우리 주변의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에너지복지사업의 확산과 정착에 앞장선다.
- ② 양 기관은 사업의 대상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상호 협력한다.
- ③ 양 기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전략적 집중 지원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을 이행한다.
 1.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수급자, 차상위자 및 복지 사각지대,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 추천한다.
 2.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추천한 대상가구는 우선 배정하여 단열공사, 바닥공사, 창호공사 등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보일러 교체 등의 고효율 물품 지원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 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사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,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 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
제6조(운영 및 해석 등)

- ①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.
-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본 협약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 기관은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이는 본 협약의 내용을 이룬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7월 7일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원장 이병학

이병학



Korea Energy Foundation

한국에너지재단

사무총장 주영남

주영남